봉담~송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차)변경실시협약

2021. 5. 31.

국 토 교 통 부

경기동서순환도로(주)

(1차) 변경실시협약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봉담~송산 고속도로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이하 "제3자 제안공고"라 한다)을 2012년 7월 12일 수립.고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12년 12월 12일 (가칭)경기동서순환도로주식회사 출자예정자 컨소시엄(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을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본 사업 진행중 출자자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등에 따른 자금재조달(이하 "본건 자금재조달"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본건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등을 반영함으로써 실시협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다음과 같이 (1차)변경실시협약(이하 "이 변경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정의)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3조(용어의 정의)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34. 본 도로: 본 사업의 대상 도로시설로서 <별표 1>(본 사업의 개요)에서 특정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마도JCT)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화성JCT) 구간 중 터널 및 교량으로 구성되는 총 연장 18.15km의 도로시설을 말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영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전기, 터널설비 등 도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34. 본 도로: 본 사업의 대상 도로시설로서 <별표 1>(본 사업의 개요)에서 특정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마도JCT)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화성JCT) 구간 중 터널 및 교량으로 구성되는 총 연장 18.30km의 도로시설을 말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영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전기, 터널설비 등 도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 3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총사업비는 <별표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6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금 4,328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금 186억 원을 제외한 금 4,142억 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총사업비는 <별표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6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금 4,431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금 186억 원을 제외한 금 4,245억 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4 조 (공사비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공사비는 <별표3>(총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6년 7월 31일 불변가격기준 금 3,713억 원으로 한다.	공사비는 <별표3>(총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6년 7월 31일 불변가격기준 금 3,771억 원으로 한다.

제 5 조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4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6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금 2,125억원(법인세 제외)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표10> (운영비용)과 같다.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6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금 2,118억원(법인세 제외)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표10> (운영비용)과 같다.

제 6 조 (사업수익률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5.19%(세후 4.68%)로 하고, 본 협약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3조(법인세법 변경시 처리)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4.74%(세후 4.25%)로 하고, 본 협약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3조(법인세법 변경시 처리)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부록의 변경)

실시협약의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는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로 각각 변경한다.

제 8 조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실시협약의 규정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간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 발생)

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일자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5월 31일

대 한 민 국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노 형 욱

경 기 동 서 순 환 도 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상 길